제25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제2차)

의원발의 조례안 (6건)

거 창 군 의 회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0-132	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
2020-59	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행복나눔과)	7
2020-133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체육시설사업소)	15
2020-135	거창군 거창시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교통과)	21
2020-136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과)	25
2020-134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농업축산과)	27

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권순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20-132
-----------	----------

발의일자						
발 의 자	권순모, 김종두, 최정환, 권재경, 이홍희, 신재화, 표주숙, 이재운, 심재수, 박수자, 김향란 의원					

1. 제안 이유

○ 거창군의 소셜미디어 관리 ·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을 통한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소셜미디어의 운영 및 운영의 위탁(안 제3조 및 제4조)
- 다. 게시물의 유지·관리(안 제5조)
- 라. 소셜미디어의 활용(안 제6조)
- 마. 기자단 운영 및 교육·훈련 지원(안 제7조 및 제8조)
- 바. 포상(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22조,「공직선거법」제112조,

「국정 홍보업무운영 규정」제10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1. 25. ~ 11. 3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소셜미디어를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을 통한 군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말한다.
-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글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 (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3.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식별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거창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민 (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기관 명의의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군정 소식, 군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 2. 교육·문화·예술·체육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 3. 주민의견 등 군민 소통 및 군민 참여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외국인 및 외국어를 사용하는 군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외국어 소셜 미디어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볼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 소셜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 1.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3.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를 게재한 경우
- 7.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8. 욕설·장난·음란물 등 공익침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9. 인종, 국가, 성별,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
- 10.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셜계정이 사용 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11.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 12.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소셜미디어의 활용)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 활용할 수 있다.
 - 1. 주요시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 2. 축제, 문화,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후원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 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군정발전을 위한 사진, 영상 등의 공모전을 개최하는 경우
 - 5.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기자단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거창군 소셜미디어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기자단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위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기자단은 군정시책 및 행사 홍보, 지역명소 소개, 재난·재해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소셜미디어에 게시한다.
- ④ 군수는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4. 군 소셜미디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5. 제작한 콘텐츠를 군에 게시된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식 등 군 공식채널을 통하지 아니하고 타 소셜미디어 채널 등에 활용한 경우
- 6.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
- 7. 그 밖의 사유로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교육·훈련 및 지원) ① 군수는 기자단의 능력향상 등을 위하여 각종 교육· 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자단이 활동한 실적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원고료, 기자신분증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공무원 및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14조)를 삭제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제7조 기자단 운영을 위한 경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7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소셜 미디어 기자단에 대한 원고료, 교육, 이벤트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처워)

구	연 도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블로그운영	41,040	36,000	36,000	36,000	36,000	185,040
	영상기자단운영	24,960	62,400	62,400	62,400	62,400	274,560
세출	카카오톡 메시지 이용권	0	5,000	5,000	5,000	5,000	20,000
	기타보상금	0	5,000	5,000	5,000	5,000	20,000
	소계(a)	66,000	108,400	108,400	108,400	108,400	499,600
rijoj							
세입	소계(b)						
ৰূ	[타비용(a-b)	66,000	108,400	108,400	108,400	108,400	499,600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천원)

구	연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소계						
의존	보조금						
재원	지방교부세						
	OO기금						
الحالح	소계						
자체 수입	지방세						
1 13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구군비		66,000	108,400	108,400	108,400	108,400	499,600
기타							
	합계	66,000	108,400	108,400	108,400	108,400	499,600

1.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2. 협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최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20-59
--------------	---------

발의일자	2020.8.25 .					
발 의 자	최정환, 김종두, 권재경, 신재화, 표주숙, 이재운, 이홍희, 심재수, 박수자, 김향란, 권순모 의원					

1. 제안이유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 양립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제2조)
- 나. 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제4조)
- 다. 지급 및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 라. 수급자의 의무. 환수 및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및「지방재정법 시행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법」 및「고용보험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행복나눔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11. 18. ~ 11. 23.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 마. 타 자치단체 유사조례 제정 현황

서울(서초구), 부산(수영구), 인천(남동구, 계양구, 동구, 서구, 연수구)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육아휴직자 장려금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 인 남성근로자(이하 "육아휴직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장려금 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금액) ① 장려금 지원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육아휴직자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2.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② 장려금은 매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자는 육아휴직 4개월 이후부터 그 기간을 산정한다.
- 제4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이후 6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1호 서식을 따른다)
-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장려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 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 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 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 1.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이하 "수급자"라 한다)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복직한 경우
 - 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 의 사유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
- 제7조(수급자의 의무) 수급자는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 2. 제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 제9조(대장 관리 등)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 식의 육아휴직자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육아휴직자 장려금 지원 신청서

						<u> </u>		<u></u>		
접수번호	<u> </u>		접수일	일자			처리	기간		
	성명			생년	월일					
신청인	주소									
건성건	거주기간									
	전화번호					휴대폰	<u> </u>			
사지	킈 성명				자	·녀 생년	월일			
육아	휴직 기간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입금계좌번 호	은행명(예금주()	계좌	<u></u> 보호()
「거창군'	일·가정 양립을		육아휴직계 대상자 주		긐 지원	조례 」제	4조에 띠	라 위외	같이 /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자의	관계 :						
		지원	대상자 성	성명 :			Д	너명(날	인)	
					년	월	일			
기창군수	누 귀하									
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									
	* 「고용보험	설법 /	니행규칙」 			서식				
				유의						
아래의 또한 아 O 육아휴 O 지원대	장려금 지급 자 사유가 발생할 ; 래의 사유 발생 F직기간 종료일 0 상자 또는 육아후 은 경우	경우 시 거 기전에	지원 중단호 창군수에게 복직하거니	하거나, 즉시 = +, 퇴직 :	지급된 1 사실을 등의 사유	장려금을 알려야 라로 고용	· 환수할 합니다. 관계가 소	수 있습 멸할 경	니다. 우	록이 되어 있
	행 정 정 5	친 공	동 이 용	및 개	인 정 보	이용	·제 공	동 의 서	4	
행정 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및 동의 ○ 목 적:육이휴직 장려급 지급 및 내역 관리 등(신청자 확인 및 식별, 수급자격 확인, 안내 및 정보전달) ○ 항 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주기간, 자녀성명, 자녀생년월일, 계좌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신청자 본인은 거창군수가 상기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은 위 유의사항과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 · 제공에 동의하며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의함 	[] {			알 구 있:	2며 이러E 	한 경우 신 	청이 불기	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은 <u></u>		정정보	동의하지 않 공동이용 및	음	-			장려금을		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육아휴직자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신	출	생(입양))아	ス	원대성	}자	ᄼᄼ	주 소	2.32	육아			비고 화수
연번	신 청 일	성명	생년 월일	출생 순위	관계	성명	생년 월일	기간 기간 (년 월)	주 소 (전화 번화)	계좌번호 (은행명)	육아 휴직 기간	지급 일	지 급 액	·무 환수 (중단) 사유 및 일자

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O 비용발생 요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분위기 조성

O 관련조문

제3조(지원대상 및 금액) ② 장려금은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 2. 비용추계의 결과
 - O. 추계의 전제
 - 연차별 지원 계획

(단위 : 명)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지원 수	20	25	30	35	40	150

※ 2019년 기준 거창군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수 : 18명

(출처: 한국고용정보원[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O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
구	분	1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군비	36,000	45,000	54,000	63,000	72,000	270,000
게돌	소계	36,000	45,000	54,000	63,000	72,000	270,000

3. 관련의견 : 해당없음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O 비용추계 : 연간 대상자 수 × 300천원 × 6개월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133
----------	----------

발의일자	
발 의 자	이재운, 김종두, 이홍희, 심재수, 박수자, 김향란, 권재경, 표주숙, 신재화, 최정환, 권순모 의원

1. 제정이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와 스포츠 마케팅 계획의 수립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스포츠마케팅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5조)
- 라.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정함(안 제6조~제7조)
 -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마.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간사를 정함(안 제8조 ~ 제10조)
- 바. 재정 지원(안 제11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1)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운영
- 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운영
-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체육시설사업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1. 25. ~ 11. 3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실업팀·학교·단체 등이 각 종목별로 구성한 팀을 말한다.
- 2.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외 대회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유치·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해 군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지훈련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지훈련 등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 2. 전년도 대회·전지훈련팀 및 금년도 대회·전지훈렴팀 현황
 - 3.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계획
 - 4. 각종 전국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
 - 5. 그 밖에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 제5조(스포츠마케팅지원 위원회 설치·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스포츠마케팅지원 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유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관련된 사항
 - 3.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예산담당관, 환경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
 - 2. 거창군 체육회 사무국장
- 3. 체육·숙박업·외식업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재정 지원)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
- 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운영 지원
-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지원(안 제11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 1개 대회 20,000천원 이상 보조금 지원
 - 전지훈련 기간 10일 이상, 전국대회 기간 2일 이상
 - * 선수 및 관계자 1명, 1일 30,000원 소비(경상남도 지침)

(단위 : 천원)

나. 추계의 결과

구	분	1차년도 (21년)	2차년도 (22년)	3차년도 (23년)	4차년도 (24년)	5차년도 (25년)	합계
총 비-	용(a - b)	-355,000	-400,000	-400,000	-400,000	-500,000	-2,055,000
	전지훈련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1,500,000
세출	전국대회	270,0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1,770,000
	소계(a)	470,000	550,000	650,000	750,000	850,000	3,270,000
세입	전지훈련	300,000	400,000	450,000	500,000	600,000	2,250,000
(유치	전국대회	525,000	550,000	600,000	650,000	750,000	3,075,000
효과)	소계(b)	825,000	950,000	1,050,000	1,150,000	1,350,000	5,325,000

3. 관련 의견

-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실적 및 예산확보에 따라 추계치는 변경될 수 있음.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유치효과(세입) : 연인원(체류일수×선수 및 가족 등) × 30,000원

- 21년도 전지훈련 세입: 10,000명×30,000원=300,000,000원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135
----------	----------

발의일자	2020.12.1.
발 의 자	이재운, 김종두, 이홍희, 심재수, 박수자, 김향란, 권순모, 최정환, 신재화, 권재경, 표주숙 의원

1. 제안이유

항노화 힐링랜드 등 거창군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 소액권 제작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거창사랑상품권 종이형 권면 금액 추가(안 제3조제2항)

1) 1,000원권

2) 2,000원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교통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12. 1. ~ 12. 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제2호를 제3호·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1,000원권
- 2. 2,000원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거창	제3조(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거창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②「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	②「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제4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신 설></u>	<u>1.</u> <u>1,000원권</u>
<u><신 설></u>	2. 2,000원권
<u>1.</u> 5,000원권	<u>3.</u> 5,000원권
<u>2.</u> 10,000원권	<u>4.</u> 10,000원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136
----------	----------

발의일자	
발 의 자	권재경, 김종두, 최정환, 이재운, 이홍희, 신재화, 심재수, 권순모, 박수자, 김향란, 표주숙 의원

1. 제안이유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입장료를 타 시군의 입장료 수준에서 적정하게 설정하고, 입장료 일부를 거창사랑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입장료 변경(안 별표1)

구분	요금	적용				
일반	3,000원	만 7세 이상 만 65세 미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징수한 입장료 중 일부 금액을 거창사랑 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줄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산림과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2. 1. ~ 12. 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1. 입장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요금	적용				
일반	3,000원	만 7세 이상 만 65세 미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징수한 입장료 중 일부 금액을 거창사랑 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134
----------	----------

발의일자	2020.11.24.				
발 의 자	이재운, 김종두, 이홍희, 심재수, 박수자, 김향란, 권재경, 표주숙, 신재화, 최정환, 권순모 의원				

1. 제정이유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책무(안 제3조)
 - 1) 군수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 2) 마을대표는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
- 다. 지원대상(안 제4조)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마을당 농업인 20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
- 라. 지원기간(안 제5조)
 - 1)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기간 중 시행
- 2)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지원기간 변경 가능마. 지원범위(안 제6조)

조리인력 인건비, 식재료 구입비, 가스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바. 사업신청 및 지원결정(안 제7조 ~ 안 제8조)

사. 완료보고 및 지도감독(안 제9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1. 25. ~ 11. 3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 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 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이하 "마을공동급식"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을공동급식을 가급적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마을당 농업인 20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로 한다.

제5조(지원기간) 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워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마을공동급식에 필요한 조리인력 인건비, 식재료 구입비, 가스비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신청)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2.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참여자 명단(별지 제2호서식)
- 제8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고, 이를 마을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완료보고) 마을대표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경우 마을공동급식 일지, 공동급식 사진, 사업비집행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마을대표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마을대표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

						"" _	-0/1	
](마을대	$\frac{\overline{\Omega}}{\Omega}$						
가. 성명	∄:			(생년월약	일:)		
나. 주소	≥ :			(연 락 >	村:)		
2. 마을	현황							
	거주	현황		-	공동급식	참여 인원]	
마을명	농가(호)		계	시설·원예				그 밖이
			명					
○ 참여병	미율:	퍼센트(1	마을전체	인구 대	비 참여	인원비율)	
3. 급식계	계획							
가. 급스			(위 치:)
	, o 소. 1인력 성'	뎌·		연락처:)
٦. ــــــ	111 0	0.	(、ピコクリ・)
4. 총 사	업비:	j	천원					
가. 조리	기인력 인기	건비:	천원	<u> </u>				
나. 식지	대료 구입	비]:	천원]				
	밖의 경비	·	천원					
		-1.1						
	. 사업계			1.1.1.1.1	3 . 13			
2	2. 농번기	마을공청	등 급식 점	함여자 명	단 1무.			
	위와 7	같이 농번	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 사	업을 신청	합니다.	
			200					
			20		•			
		신기	정인(마을	대표):		(인)		

거창군수 귀하

[붙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계획서

-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20 . . . ~ 20 . . .

가. 급식지원기준일수 : 일

나. 급식기간: 일부터 일까지(일)

3. 사업자

○ 마을대표 성명: 전화번호:

4. 식재료 수급계획

조리원 성명	급식기간		식	재료 구입 겨]획	
		계	육고기	생선류	채소류	그 밖에
		kg	kg	kg	kg	kg
		kg	kg	kg	kg	kg

5. 조리인력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 락 처	계 좌 번 호		

6. 사업비 내역

구 분	세 부 내 용
인건비	천원(원/일 × 일)
식재료 구입비	천원(구입품목:

【별지 제2호 서식】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참여자 명단

[마을명:

연번	주 소	성 명	비고
계		○○명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마을공동급식 조리인력 인건비, 식재료 구입비, 가스비 등

3. 관련 조문

- 안 제6조(지원범위)
 - 군수는 마을공동급식에 필요한 조리인력 인건비, 식재료 구입비, 가스비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조리인력 인건비, 식재료 구입비, 가스비 등

나. 추계의 전제 : 2020년도 지원 사업비 기준 추정

다. 추계 결과 : 2021 ~ 2025년(5년간)사이 세출 20억원 정도 소요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1억(5%), 시군 19억(95%)

5. 연도별 비용추계서(세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농번기 마 <u>을공동</u> 급식 지원사업	2,013,000	380,600	391,600	402,600	413,600	424,600